서울특별시의회
제301회 정례회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2448호)

제 안 설 명

2021. 6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**박 순 규**

(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,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)

안녕하십니까? 박순규 의원입니다.

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**「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**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2011년 3월 제정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・유출・오용・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(변상금 사전통지서)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상위법인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별지 '변상금 사전통지서'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타 시·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"**주민등록번호**"를 "**생년월일**"로 대체하기 위한 것 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